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4 선고 2023가단111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백인광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7,717,0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7,717,08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 3. 21. E에게 5,000,000원을 대출이율, 연체이율 각 36.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F는 2013. 12. 26. 이 사건 채권을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G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595698호로 E은 G에 8,197,369원 및 그 중 4,223,066원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7. 8. 15. 확정되었다.

다. G는 2017. 9. 11.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였다.

라. E의 모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I, J, E, K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6.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2018.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8. 7. 31. L에게 거래가액 218,000,000원에 2018. 7.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8. 7. 31.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K의 배우자 N의 대출금 87,765,631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N, 근저당권자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바. 2023. 2. 22.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는 17,717,0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채권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6. 11. 29. 이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채권 중 미상환 원금 4,223,066원만 원고에 양도되었으며 원금 이외의 채권이나 판결에 의한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금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G의 E에 대한 판결이 2017. 8. 15.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미상환원금잔액 4,223,066원, 비고 이자는 별도문의'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만으로는 G가 원고에 이 사건 채권의 원금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1/5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E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망인의 유언에 따른 행위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7. 1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2017. 5. 31.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가 2017. 6. 5. E의 채무 6,760,931원을 대위변제하여, 2017. 6. 22. 취하를 이유로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다1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위 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는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 이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7,717,081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18,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87,765,63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6,046,873원[= (218,000,000원 - 87,765,631원) × 1/5, 원 미만 버림] 중 더 적은 금액인 17,717,081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7,717,0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717,08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

별 지 목 록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 아파트 []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슬래브

지붕 24층 아파트

지층 1033.66m²1층 765.72m²2층 846.51m²3층 846.51m²4층 843.00m²5층 837.33m²6층 837.33m²7층 837.33m²8층 837.33m²9층 837.33m²10층 837.33m²11층 837.33m²12층 837.33m²13층 837.33m²14층 837.33m²15층 837.33m²16층 837.33m²17층 837.33m²18층 837.33m²19층 837.33m²20층 837.33m²

21층 837.33m²
 22층 837.33m²
 23층 692.67m²
 24층 692.67m²
 부속건물:조적조
 노인정, 관리실
 1층 81.50m²
 2층 81.50m²
 부속건물:조적조 경비실
 1층 7.56m²
 부속건물:조적조 경비실
 1층 7.56m²
 부속건물:철근콘크리트조
 전기, 기계실
 지하층 136.38m²
 부속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지하주차장
 지하1층 3436.78m²
 지하2층 1583.61m²
 (내역-4407.47m²:지하주차장 612.92m²:지하대피소)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9.82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의정부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239분의 19.12

